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 직 후 보 자 등 에 관 한 정 보 의
수 집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한 시대에 국내인재 외에 해외인재(외국인)를 공직사회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·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범국가적 인재정보 활용을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며,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국내방문 해외인재(외국인) 정보 수집·관리 근거 마련(안 제2조제2항·제3항)

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, 행사 및 교육·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·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음

나.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 확대(안 제6조제1항·제2항)

인사상 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현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기업 추가

다.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 확대(안 제6조의2제1항)

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국가기관의 경우 현행 개방형 직위에서 4급(상당)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(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)까지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4. 5. ~ 5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본문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해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, 행사 및 교육·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 또는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”을 “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”을 “다음 각 호 직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임기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(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)
3.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제6조(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<u>공공기관</u> 을 말한다.	제6조(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직접 열람) ① ----- ----- -----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---.
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,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	② ----- ----- ----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	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)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와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의 적격자를 데이터베이스, 관련 기관 또는 단체,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발굴하여 추천하고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.	제6조의2(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 직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의4제1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(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)

②・③ (생 략)	3. 공공기관의 개방형 계약직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1 - 8544